

#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66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5월 3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폐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행 「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」의 주요 입법 취지를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및 제8조에 “인도주  
의에 기초한 협력사업” 문구를 신설함(안 부칙 제2조).

#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관한 사업”을 “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

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

#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부 칙	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<u>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</u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	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 <u>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</u> 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<p>〈신설〉</p>	<p><u>제2조제1항 중 “관한 사업”을 “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”으로 한다.</u></p>
제4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다.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	제4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다.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
<p>〈신설〉</p>	<p><u>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u>  <u>6.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</u></p>

#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관한 사업”을 “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

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